

대법원 2022. 6. 16 선고 2022다211126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6. 16 선고 2022다211126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1626 판결

수원지방법원용인지법원 2020. 7. 24 선고 2019가소14894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

피고, 피상고인 B

판결선고 2022. 6. 16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. 1. 20. 선고 2021나1626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,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이동원, 주 심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대법관 천대엽